

인천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나712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원고보조참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승수, 노동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53730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10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의 부인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증여계약의 부인에 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고, 가액배상금에 관한 청구취지는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각 ‘A’을 ‘원고’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0.’을 ‘2014. 12. 30.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제9행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8. 24.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2. 1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위 개시신청서에 첨부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도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 5. 2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개회1004004).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2019. 8. 23.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을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라.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제3행의 아항을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제2항, 밑에서 제3행의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제6면 제4행의 ‘4. 본안에 관한 판단’을 ‘2. 이 법원의 판단’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2)항, 제12행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도 2013. 5. 1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3. 12. 18.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2014. 6.경부터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던 점(결국 원고는 2016. 7. 6.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89429), ② 당시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무1)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들이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한 것은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총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원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 2항,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사. 제1심판결 제8면 밑에서 제6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C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을 추가한다.

아.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계약금이나’ 및 ‘피고나 C이 매매계약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났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각 삭제한다.

자.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제10행의 2)항, 제11면 밑에서 제6행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이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의 행사는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배상액의 산정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부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3. 2. 21.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F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23.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을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는 이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부분은 45,000,000원(시가 1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05, 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현선훈, 판사 백규재

1)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보조참가인이 대위변제를 통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2014. 3. 7.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13. 원고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 등이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본문, 제589조 제2항 제1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부인의 소는 특정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닌 전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채권자들 중 1인의 채권이 어떠한 사정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자들을 위해 부인권의 행사가 필요한 이상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